

##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 - 115호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 가. 상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나. 국민주택등의 공급 대상이 무주택세대주였다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 변경함
- 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함

다. 공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 변경함

라.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함

마.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 세대주 연령을 신청자 연령으로 변경
- 가점단서의 세대주 기준을 신청자 기준으로 변경함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10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건축계획과장, 전화 : 032-440-4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이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급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수급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을 말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5.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6. “장애인”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를 말한다.
7. “부양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부양자를 말한다.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7의2호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말한다.
9.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저축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10.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제9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항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는 별표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5조제1항)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신청자 연령 (25점)	60세 이상	25	
	50~60세 미만	23	
	40~50세 미만	21	
	40세 미만	19	
2. 세대원수 (30점)	5인 이상	30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인	28	
	3인	26	
	1~2인	24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15년 이상	30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0~15년 미만	28	
	5~10년 미만	26	
	1~5년 미만	24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도 포함	15(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 포로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7		
	4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 포로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p> <p>2.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p> <p>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을 말한다.</p> <p>5.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p>	<p>제2조(용어의정의)----- -----</p> <p>1. “수급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수급자를 말한다.</p> <p>2. “국가유공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을 말한다.</p> <p>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p> <p>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을 말한다.</p> <p>5.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p>

현행	개정안
<p><u>말한다.</u></p> <p>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7. “부양자”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p> <p>9.“청약저축가입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저축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p> <p>10.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p> <p>11. ~ 12.(생략)</p>	<p><u>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u></p> <p>6. “장애인”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를 말한다.</p> <p>7. “부양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부양자를 말한다.</p> <p>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7의2호에서 규정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말한다.</p> <p>9.“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에 따라 저축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p> <p>10.“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p> <p>11. ~ 12.(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대상)-----</p> <p>-----</p> <p>---국민주택기금의 자금---</p>	<p>제3조(적용대상)-----</p> <p>-----</p> <p>---주택도시기금-----</p>
<p>제4조(공급대상) <u>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p>	<p>제4조(공급대상) <u>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u></p>

현행	개정안
<p>1. <u>수급자</u></p> <p>2. <u>국가유공자</u></p> <p>3. <u>일본군위안부 피해자</u></p> <p>4. <u>지원대상 한부모가족</u></p> <p>5. <u>북한이탈주민</u></p> <p>6. <u>장애인</u></p> <p>7. <u>부양자</u></p> <p>8. <u>아동복지시설 퇴소자</u></p> <p>9. <u>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자</u></p> <p>10. <u>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p> <p>11. <u>청약저축가입자</u></p>	<p><u>항제1호부터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p>
<p><u>제5조(입주자 선정)</u></p> <p>①~②(생략)</p> <p>1.~2.(생략)</p> <p>③-----</p> <p>-----</p> <p><u>무주택세대주</u>-----</p> <p>1.~2.(생략)</p> <p>④(생략)</p> <p>1.~2.(생략)</p> <p>⑤(생략)</p>	<p><u>제5조(입주자 선정)</u></p> <p>①~②(현행과 같음)</p> <p>1.~2.(현행과 같음)</p> <p>③-----</p> <p>-----</p> <p><u>무주택세대구성원</u>-----</p> <p>1.~2.(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1.~2.(현행과 같음)</p> <p>⑤(생략)</p>

[별표] 당초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5조제1항)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세대주 연령 (25점)	60세 이상	25	
	50~60세 미만	23	
	40~50세 미만	21	
	40세 미만	19	
2. 세대원수 (30점)	5인 이상	30	▶ 주민등록포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인	28	
	3인	26	
	1~2인	24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15년 이상	30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0~15년 미만	28	
	5~10년 미만	26	
	1~5년 미만	24	
4. 가 점(15점) ※ 세대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유형 3가지)	15(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한국군 포로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7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한국군 포로	
4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별표] 변경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제5조제1항)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신청자 연령 (25점)	60세 이상	25	
	50~60세 미만	23	
	40~50세 미만	21	
	40세 미만	19	
2. 세대원수 (30점)	5인 이상	30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4인	28	
	3인	26	
	1~2인	24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15년 이상	30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0~15년 미만	28	
	5~10년 미만	26	
	1~5년 미만	24	
4. 가 점(15점) ※ 신청자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도 포함	15(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 포로	
	13(유형 2가지)		
	11(유형 1가지)		
	7		
	4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 포로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